

[ 2010. 7. 1 ] [ 374 , 2010. 6.30, ]

( ) 02 - 2110 - 6914

[별표 4] <개정 2009.8.7>

사업장폐기물의 분류번호(제2조의2 관련)

1. 지정폐기물의 분류번호

01-00-00: 특정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

01-01-00 폐합성고분자화합물

01-01-01 폴리에틸렌

01-01-02 폴리프로필렌

01-01-03 폴리염화비닐수지

01-01-04 폴리에틸렌텔레프탈레이트

01-01-05 페놀수지

01-01-06 폴리우레탄

01-01-07 그 밖의 합성수지

01-01-08 합성고무

01-02-00 오니류

01-02-01 폐수처리 오니

01-02-02 공정 오니

01-03-00 폐농약

01-03-01 유기인계 농약

01-03-02 유기염소계 농약

01-03-03 카바메이트계(Carbamate) 농약

01-03-04 그 밖의 농약

01-04-00 특정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폐기물

02-00-00: 부식성폐기물

02-01-00 폐산

02-01-01 염산

02-01-02 황산

02-01-03 그 밖의 폐산

02-02-00 폐알칼리

03-00-00: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

03-01-00 광재(鑛滓)

03-01-01 알루미늄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광재

03-01-02 납 열처리와 야금(冶金) 공정에서 발생한 광재

03-01-03 아연 열처리 공정에서 발생한 광재

03-01-04 그 밖에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광재

03-02-00 분진

- 03-03-00 폐주물사 및 폐사
  - 03-03-01 폐주물사
  - 03-03-02 폐사
- 03-04-00 폐내화물 및 도자기 조각
  - 03-04-01 내화물
  - 03-04-01 도자기 조각
- 03-05-00 소각재
  - 03-05-01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 중 바닥재와 비산재가 분리·배출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비산재
  - 03-05-02 그 밖에 소각시설 중 바닥재와 비산재가 분리·배출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비산재
  - 03-05-03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 중 바닥재와 비산재가 분리·배출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바닥재
  - 03-05-04 그 밖에 소각시설 중 바닥재와 비산재가 분리·배출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바닥재
  - 03-05-05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 중 바닥재와 비산재가 분리·배출되지 아니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재
  - 03-05-06 그 밖에 소각시설 중 바닥재와 비산재가 분리·배출되지 아니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재
- 03-06-00 안정화 또는 고형화 처리물
  - 03-06-01 안정화 처리물
  - 03-06-02 시멘트고형화 처리물
  - 03-06-03 킬레이트(Chelate) 처리물
  - 03-06-04 그 밖의 고형화 처리물
- 03-07-00 폐촉매
- 03-08-00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
  - 03-08-01 폐흡착제
  - 03-08-02 폐흡수제
- 04-00-00: 폐유기용제
  - 04-01-00 할로겐족 유기용제
  - 04-02-00 그 밖의 폐유기용제
- 05-00-00: 폐페인트 및 페락카
  - 05-01-00 유성페인트
  - 05-02-00 수성페인트
  - 05-03-00 락카

06-00-00: 폐유

06-01-00 폐광물유

06-01-01 윤활유(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·포장재인 기어유 및 내연기관용 윤활유를 말한다)

06-01-02 연마유·절삭유(금속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처리용유 및 비수용성 절삭유 등을 말한다)

06-01-03 기계유·작동유(주로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계유·냉동기유·터어빈유·베어링윤활유·압축기유·유압작동유·열매체유 및 프로세스유 등을 말한다)

06-01-04 연료유

06-01-05 폐오일 필터

06-01-06 그 밖에[아스팔트유·전기절연유·그리스(grease) 및 방청유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30퍼센트 이상의 수분이 함유되거나 20퍼센트 이상의 이물질이 함유된 폐유, 고체상태의 폐유 등을 말한다]

06-02-00 폐동식물유

06-03-00 그 밖에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폐유

07-00-00: 폐석면

07-01-00 건조고형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하여 석면이 1퍼센트 이상 함유된 제품·설비(뿜칠로 사용된 된 것을 포함한다) 등의 해체·제거시 발생하는 것

07-02-00 슬레이트 등 고형화된 석면제품 등의 연마·절단·가공 공정에서 발생된 부스러기 및 연마·절단·가공 시설의 집진기에서 모아진 분진

07-03-00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(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·제거작업에 사용된 경우에는 모든 비닐시트)·방진마스크·작업복 등

07-03-00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·방진마스크·작업복 등

08-00-00: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

08-01-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유

08-02-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유기용제

08-03-00 기타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액상의 것

08-04-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액상이 아닌 것

09-00-00: 폐유독물

- 10-00-00: 의료폐기물
- 10-11-00 격리의료폐기물
  - 10-12-00 위해의료폐기물
    - 10-12-01 조직물류폐기물(태반을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
    - 10-12-02 병리계폐기물
    - 10-12-03 손상성폐기물
    - 10-12-04 생물·화학폐기물
    - 10-12-05 혈액오염폐기물
    - 10-12-06 인체조직물 중 태반(재활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)
  - 10-13-00 일반의료폐기물
- 11-00-00: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

## 2.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의 분류번호

- 51-01-00 유기성오니류
  - 51-01-01 폐수처리오니
  - 51-01-02 공정오니
  - 51-01-03 정수처리오니
  - 51-01-04 하수처리오니
  - 51-01-05 분뇨·가축분뇨처리오니
- 51-02-00 무기성오니류
  - 51-02-01 폐수처리오니
  - 51-02-02 공정오니
  - 51-02-03 정수처리오니
  - 51-02-04 하수처리오니
  - 51-02-05 하수준설토
  - 51-02-06 건설오니
- 51-03-00 폐합성고분자화합물
  - 51-03-01 폐합성수지류
  - 51-03-02 폐합성고무류
  - 51-03-03 기타
- 51-04-00 광재류
  - 51-04-01 고로슬래그
  - 51-04-02 제강슬래그
  - 51-04-03 기타 광재류
- 51-05-00 분진(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포집된 것에 한정하되, 소각시설에서 발생

되는 것은 제외한다)

- 51-06-00 폐주물사 및 폐사
  - 51-06-01 폐주물사
  - 51-06-02 폐사(샌드블라스트 폐사)
- 51-07-00 폐내화물 및 폐도자기 조각
  - 51-07-01 폐내화물
  - 51-07-02 폐도자기 조각
- 51-08-00 소각재
  - 51-08-0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중 바닥재와 비산재가 분리·배출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비산재
  - 51-08-02 그 밖의 소각시설 중 바닥재와 비산재가 분리·배출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비산재
  - 51-08-03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중 바닥재와 비산재가 분리·배출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바닥재
  - 51-08-04 그 밖의 소각시설 중 바닥재와 비산재가 분리·배출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바닥재
  - 51-08-05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중 바닥재와 비산재가 분리·배출되지 아니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재
  - 51-08-06 그 밖의 소각시설 중 바닥재와 비산재가 분리·배출되지 아니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재
- 51-09-00 안정화 또는 고형화 처리물
  - 51-09-01 안정화 처리물
  - 51-09-02 시멘트고형화 처리물
  - 51-09-03 킬레이트(Chelate) 처리물
  - 51-09-04 그 밖의 고형화 처리물
- 51-10-00 폐촉매
- 51-11-00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
  - 51-11-01 폐흡착제
  - 51-11-02 폐흡수제
- 51-12-00 폐석고 및 폐석회
  - 51-12-01 폐석고
  - 51-12-02 폐석회
- 51-13-00 연소잔재물
- 51-14-00 폐석재류
- 51-15-00 페타이어

- 51-16-00 폐식용유
- 51-17-00 동식물성잔재물
  - 51-17-01 동물의 사체
  - 51-17-02 동물성잔재물
  - 51-17-03 식물성잔재물
- 51-18-00 폐전기전자제품류
- 51-19-00 왕겨 및 쌀겨
- 51-20-00 폐목재류
  - 51-20-04 1등급
  - 51-20-05 2등급
  - 51-20-06 3등급
- 51-21-00 폐토사류
  - 51-21-01 폐토사
  - 51-21-02 건설폐토석
- 51-22-00 폐콘크리트
- 51-23-00 페아스팔트콘크리트
- 51-24-00 폐벽돌
- 51-25-00 폐블럭
- 51-26-00 폐기와
- 51-27-00 폐섬유
- 51-28-00 폐지류
  - 51-28-01 폐지
  - 51-28-02 폐벽지(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건설폐기물만 해당한다)
- 51-29-00 폐금속류
- 51-30-00 폐유리
- 51-31-00 폐타일
- 51-32-00 폐보드류
- 51-33-00 폐판넬
- 51-34-00 혼합건설폐기물(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 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것을 말한다)
- 51-99-00 그 밖의 폐기물